

# 육우자조금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

지도총무부 과장대리 | 한지태

**국내 육우산업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난해 12월 초 미국의 BSE(소해면상뇌증) 발생과 국내의 연이은 가축질병(부루세라, 가금인플루엔자등) 발생으로 쇠고기 소비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3월 육우거세 B2가격이 작년 동월 칠천육백원대에서 육천이백원대로 20%가량 급격히 하락하였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유사비 증가와 시세하락 등의 이중고로 육우농가의 경영여건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육우농가들은 그동안 규모화, 전업화를 추진하여 경영능력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생산성측면에서도 거세를 통한 장기비육으로 고급육 생산에 주력해 왔지만 여전히 소비자인식이 육우하면 젖소도태우로 인식하고 있어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BSE발생으로 수입냉장육 가격하락과 이에 따른 반대급부로 육우가격 상승을 기대 했음에도 오히려 수입냉장육 가격은 상승하고 육우가격

은 하락하는 기현상이 발생되었다. 이는 육우에 대한 소비자인식 부족으로 인해 수입냉장육의 빈 자리를 육우가 대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고, 육우가 고급육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인식 전환 등 대소비자 홍보를 통해 육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육우고기의 우수성을 알려야 할 것이다.

## 육우자조금사업의 필요성 대두

지난해 10월 발족한 육우분과위원회내 육우산업발전대책협의회에서는 육우얼굴찾기 방안에 대한 수차례 논의를 거쳐 육우자조금사업의 추진을 결의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는 육우분과 안성지회에서 자조금 추진을 결의하고 협회에 사업추진을 촉구하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과거 육우농가가 생산에만 전념하면 일정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으나, 수입냉장육의 유통과 소비자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고급육을 생산하고도 정당한 가격을

### 등급별 가격

(단위: 원)

구분	02년1월	3월	6월	9월	12월	03년1월	3월
B2	10,294	7,662	7,626	7,924	8,091	8,348	7,671
B3	8,162	6,405	6,142	6,309	6,034	6,057	5,265

구분	03년6월	9월	12월	04년1월	2월	3월	4월 10일
B2	7,061	7,267	7,067	6,896	6,227	6,229	6,360
B3	5,286	6,212	5,971	6,072	5,434	5,574	5,690

(자료 : 등급판정소)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더 이상 대소비자 홍보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농가 스스로의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얼마 전 협회에서 방송작가, PD, 기자 등을 표본으로 설문지를 통해 육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고 일컬어지는 소비주도층 조차도 육우고기를 젖소고기로 오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BSE파동 당시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에서는 젖소가 쓰러지는 장면을 보도화면으로 활용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에게 육우고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중시킨 바가 있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육우고기에 대한 홍보가 얼마나 철실한가를 반증하는 예일 것이다.

#### 육우자조금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요건

육우자조금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 낙농자조금사업의 경우, 자조금 사업을 처음 실시한 1999년도에 82% 이상의 농가 동참율과 함께 낙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업 초기연도였음에도 자조금사업을 7년 이

상 먼저 시작했던 타 축종과는 비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 최근에는 양돈자조금 역시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여 과거 극히 부진했던 자조금사업을 연간 90억원의 대단위 사업으로 확장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낙농자조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양돈자조금 사업규모를 키우려는 것은 자조금사업의 주체인 농가들 스스로가 자조금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별로 결집된 여론이 한데 모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육우자조금사업의 시행을 위해서는 지역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지회설립과 이를 통한 육우자조금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나아가 자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 지회설립과 육우자조금에 대한 공감대 형성

육우자조금은 육우인이 자진 부과하는 산업발전의 기금이므로 그 부담자인 육우인이 먼저 이 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지회설립을 통한 조직구성과 동시에 자조금에 대한 교육과 토론과정을 거쳐 그 목적, 성격, 운영주체, 사업내용 등을 철저하게 주의해야 한다. 국가에 세금을 내어 내 나라를 지키듯이 육우농가 스스로가 자조금을 내어 내 산업을 지키려는 육우인 자세가 전제요건이란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육우자조금 시행에 있어 그 첫 과제는 육우농가 자체의 강한 조직력을 갖는 것이다.

낙농자조금의 경우 1998년도에 원유수급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자 스스로 젖소를 도태하여 원유수급불균형을 해결코자 하였고, 자조금사업의 시행을 통해 낙농가가 직접 기금을 조성하여 소비홍보 촉진사업을 전개키로 하였다. 자조금시행의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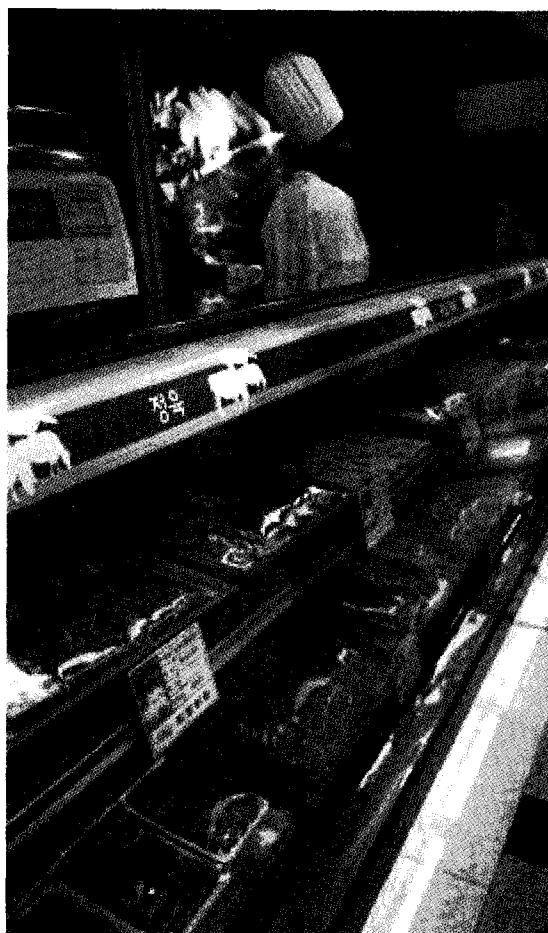
부여과정은 지금의 육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낙농자조금사업이 원활히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별 농가대표기구인 지회가 있어 그 안에서 낙농가 개개인의 동의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된데 있다. 하지만 육우농가의 경우 현재 안성, 강화, 남원 등 3곳만이 지회가 구성되어 있어, 전국적인 농가결집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자조금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전국조직(지역 분회 또는 지회)의 구성 및 대표자 선출이 필수 요건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먼저 육우농가의 여론과 자조금사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회설립과 회원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각 도 및 시·군별 지회 설립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 자조금 준비위원회 구성

당장 자조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회설립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기존의 지회조직과 분과위 조직을 활용하여 육우인 대표로 구성하는 자조금 준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본다. 협회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육우자조금 준비위원회 구성을 통해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동시에 지역별 지회설립과 지회단위별로 육우자조금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자율적인 토론과 교육, 세미나 등의 개최로 농가 스스로 자조금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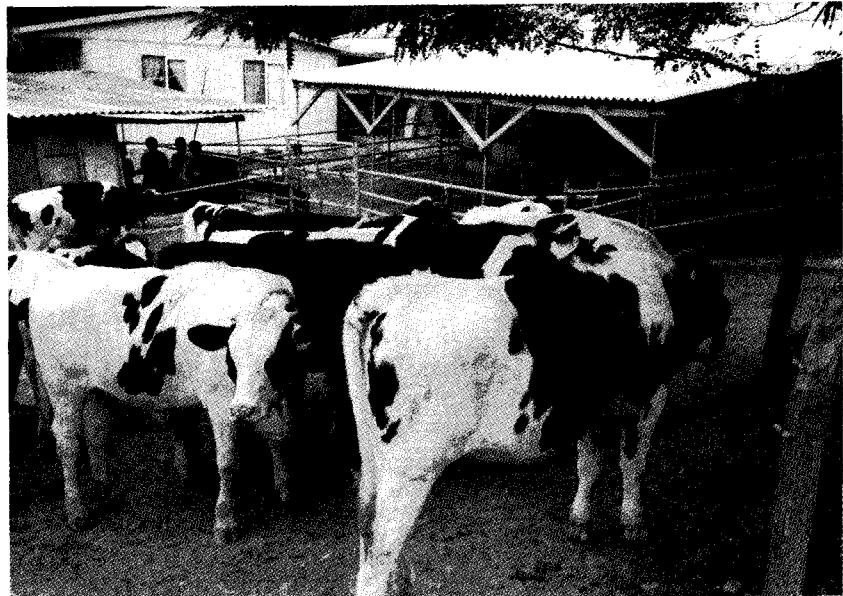
### 향후 추진방향

앞에서 언급한 선행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자조금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의무자조금으로 가기에는 그 요건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임의자조금 사업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 2002년 11월 공포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자조금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임의자조금사업과 의무자조금



사업 중 농가 결의에 의해 사업방식을 선택하여 진행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의무자조금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시군구 단위로 구분하여 대의원 50명을 직접 선거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는데 선거비용과 선거방식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사실상 실현하기 어려운 모순점이 있다. 설사 대의원을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대의원회 기능이 총회로서

사업승인 등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거출금액 및 방식만 결정하게 되어 있다. 또한 사업주체가 돈을 거출하는 육우농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와 농협이 협의하여 사업을 실시도록 하는 등 법개정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 법정 육우자조금(임의자조금)사업시 준비사항

#### ○ 육우농가 현황조사

- 전국의 육우농가 현황자료  
(농가수, 농가별 사육두수, 주소, 연락처 등)

#### ○ 전국조직(지역 분회 또는 지회)의 구성 및 대표자 선출

- 육우자조금 관리위원회 구성  
(농가대표 11인, 학계, 소비자, 공무원, 유통전문가)
- 거출금액 결정
  - : 육우 도축시 마리당 원을 공제 또는 사육두수에 의해 매월 자율적으로 공제
  - 예) 낙농자조금의 경우 생산원유 kg당 1원씩을 유대에서 공제
  - ; 도축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관리위원회 통장으로 송금
  - (축산물소비촉진법 규정사항, 수수료는 도축업자와 협의)

육우자조금사업을 임의자조금 사업으로 실시하게 될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육우농가 현황조사, 전국조직의 구성 및 대표자선출을 통한 관리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의 수립 및 농림부의 사업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자조금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자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느냐 하는 것이다.

육우자조금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 정부의 제도적 지원, 생산자 단체인 협회의 자조금 추진 주체로서의 역할 등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왔다고 믿기에 협회에서는 육우자조금 조기실현을 위해 시행요건을 갖추는데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최근 육우농가 스스로 육우고기에 대한 소비홍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조금사업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자조금사업의 성공이 예상된다. ☺